

청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1122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고영농조합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영, 이인형, 임형섭, 김지연

변론 종결2021. 9. 15.

판결 선고2021.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사이에 2018.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134,438,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34,438,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산지 내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¹⁾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2008. 11. 5.부터 2012.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2,934,830,000원, 피보험자 금산군수로 정하여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보증보험계약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험기간 2008. 11. 5.부터 2018.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4,118,929,000원, 피보험자 금산군수로 정하여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상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금산군은 2017. 10. 12.경 D에 산지관리법 제4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3)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기간 만료일(2017. 11. 30.) 10일 전까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D은 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금산군은 2018. 2. 1.경 복구설계서를 2018. 2. 20.까지 제출할 것을 다시 통지하였고 D은 복구설계서의 제출연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금산군은 2018. 3. 9.경 복구설계서 제출연기 사유를 2018. 3. 30.경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D은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산군은 2018. 5. 4.경 D에 복구명령을 내리면서 2018. 5. 30.까지 복구설계서 제출 승인 후 복구공사에 착수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금산군은 2018. 5. 15.자로 D에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복구대집행을 공시송달하였다.

다. 금산군은 D이 2018. 5. 30.을 경과하여도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공사에 착수하지 않자 2018. 7.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이하 '1차 보험금 청구'라 한다). 그러자 D은 금산군에 보험금 청구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였고 금산군은 2018. 8. 27.경 D이 2018. 10. 30.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D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금산군은 2019. 2. 13.경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이하 '2차 보험금 청구'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19.경 금산군에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4,118,929,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E, F(병합), G(중복)]에서 2,984,119,00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금산군에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1,134,438,008원(=4,118,929,000-2,984,119,000원)의 원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

마. 피고는 2018. 7. 10.경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연대보증인인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200,000,000원(기계기구 대금 204,500,000원 별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8. 23.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2018. 8. 10.경에는 H4) 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토지인 충북 보은군 I, J, K, L 각 토지를 15,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2018. 8. 20.경에는 영농조합법인 M5) 과 충북 보은군 N 토지를 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8. 8. 23.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충북 보은군 I, J, K, L, N 각 토지를 통칭하여 '보은농장'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07. 5. 1.경 8,391,033,800원, 2014. 8. 29.경 7,332,193,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 을 제2, 18 내지 23,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하여 1,134,438,008원의 이 사건 채권을 갖고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사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10.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를 근거로 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7. 10.경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한 연대보증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9. 3. 19.경 금산군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현실화되었다.

3) 그리고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이 법원의 대전세무서에 대한 2021. 2. 15.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인 D이 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다58178 판결 등 참조), D은 금산군으로부터 수차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받고도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고 금산군은 1차 보험금을 청구한 2018. 7. 24. 전인 2018. 5. 4.경에 2018. 5. 30.까지 복구설계서 제출 승인 후 복구공사에 착수할 것을 명하는 복구명령을 내렸으므로 그 기간만료일인 2018. 5. 30.에는 D의 복구의무 불이행 상태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무렵에는 확정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약 40일 후인 2018. 7. 10.에 체결되었다.

② 이 사건 보증보험 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사고 발생시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보험사고는 2018. 5. 30.경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는 이미 사전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한 상태였다.

③ 이 법원의 대전세무서에 대한 2021. 2. 15.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계약자인 D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16. 6. 2.경에는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자력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금산군은 D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10. 12.경부터 수차례 산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은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상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5) 한편, 피고는 보험사고의 발생일과 관련하여 금산군은 1차 보험금 청구를 취하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8. 8. 27.경 D에 2018. 10. 30.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위 제출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2018. 11. 1. 또는 복구설계서의 제출을 통지한 2018. 8. 27.이 보험사고 발생일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채권 성립과 관련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의 발생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증보험의 계약자인 D의 자력은 악화된 상태였던 점, 금산군은 D에 대하여 2017. 10. 12.경부터 수차례 산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은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복구명령의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보은군에 대한 2020. 8. 20.자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8년경부터 법인세를 체납하는 등 자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리고 위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Q, R, S,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U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3,811,000,000원, P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50,000,000원, Q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50,000,000원, R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S의 근저당권부질권을 포함하여 400,000,000원, T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200,000,000원, V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0,000,000원, W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700,000,000원, 합계 6,711,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07. 5. 1.경 8,391,033,800원, 2014. 8. 29.경 7,332,193,400원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가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

4) 따라서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수익자의 선의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3 내지 17, 24 내지 35, 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1~2012년경에 C으로부터 병아리(육계)를 매입하여 유통하는 거래를 한 적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C과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와 C 및 C의 임원 사이에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자산상태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종계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왔고, 본격적인 종계사업 진출을 위해 보은농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의 이사인 X6)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익산시 Y 소재 Z농장과 논산시 AA 소재 AB농장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A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D) 및 주식회사 AE 등과 종란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종계 사업 진출을 위한 경험을 쌓은 것으로 보이는 바, 보은농장 인수경위와 관련한 피고의 설명은 일응 수긍이 된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14. 8. 29.경 7,332,193,4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액은 7,200,000,000원(기계기구 대금 204,500,000원 별도)이므로 그 매매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5. 1.경 그 감정평가액이 8,391,033,80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저가로서 정당한 가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4. 8. 29.자 감정평가서상 토지가액은 1,651,473,000원, 건물가액은 5,464,800,400원, 기계기구 215,920,000원이고 2007. 5. 1.자 감정평가서상 토지가액은 2,289,809,000원, 건물가액은 6,101,224,800원으로서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토지 보다 훨씬 큰 사실,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그 운영을 위해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주로 건물의 수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바 건물의 가치평가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 8. 29.자 감정평가액은 특별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18. 8. 27.경 U은행으로부터 5,0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C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U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8. 20.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2018. 8. 23.경에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한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200,0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U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5,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위 계약인수일과 5,000,000,000원의 지급 일자 사이에 단지 7일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AF와 2018. 9. 7. 체결한 계약서 표지에는 입추일 "18/09/07~14", "계약일 18/07/07"로 기재되어 있어 AF에 대한 납품을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2018. 8. 말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 역시 2018. 8.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워 2018.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2021. 1. 11.자 준비서면 22면 참조), U은행 명의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계약인수가 이루어져 기존 채무자인 C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C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매매대금 미납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전에 위 계약인수가 이루어졌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특별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는 2018. 9. 6. 보은농장을 분사무소로 등기하였고, 영농조합법인 B 보은지점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였으며, 보은농장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업체들로부터 병아리를 공급 받아 종란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AF 및 주식회사 AC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는 실제로 보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도형석

판사조경진

판사조수민

별지

제2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절차 등)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4) H는 2006. 11. 27.부터 2015. 9. 17.까지 C의 대표이사였고, 2006. 11. 27.부터 현재까지 C의 이사이다.

5) 영농조합법인 M의 대표이사인 O는 2015. 9. 17.부터 2017. 4. 11.까지 C의 대표이사였고,

2006. 11. 27.부터 현재까지 C의 이사이다.

6) X은 2012. 6. 20.경부터 2015. 6. 20.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2012. 6. 2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이다.